

투자 위험 등급 5등급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호(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호(채권)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국밸류10년투자 연금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호(채권) (A3066)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oreavalue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17년 7월 3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8년 6월 15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 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CONTENTS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7.07.31)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호(채권) (펀드코드: A3066)

투자 위험 등급
5 등급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호(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	--

집합투자기구 특징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로 국내 채권에 장기투자 하는 채권형 증권투자신탁으로서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에 집중 투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자금 형성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전환형, 종류형		
집합투자업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 02-3276-60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 조조
효력발생일	2018년 06월 15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oreavalue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종류(class)	C	C-E	S-P
가입자격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온라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펀드수퍼마켓 회원,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보수 (연,%)	판매	0.3500	0.1700
	운용 등	집합투자업자 0.1500, 신탁업자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 0.0180	
	기타	0.0109	-
	총 보수비용	0.5489	0.3580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6.07.19~2017.07.18]

(주 2)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 3) 보수는 최초보수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됩니다.

매입 방법	17시 이전: 2영업일 기준가 매입 17시 경과 후: 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17시 이전: 3영업일 기준가로 3영업일 지급 17시 경과 후: 4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 지급
기준가	<p>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p>공시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국공채 위주로 채권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일부는 유동성 자산에 탄력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자금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자금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 전략: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주로 채권에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파생상품, 수익증권, 기업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운용 합니다.
3. 수익 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안정적인 채권, 우량 CP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당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4.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운용현황(2018.06.01)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이채원	1964	22	31,880 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 경영학 - 동원투신운용(1996 ~ 2000) - 한국투자증권(2000 ~ 2006)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06 ~ 현재)
손환락	1981	12	17,591 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 알파에셋자산운용(2009 ~ 2011)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11 ~ 현재)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운용현황(2018.06.01)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김운실	1982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이스트 응용수학 석사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11 ~ 2016) - 한국투자금융지주(2017 ~ 2018.05)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18.06 ~ 현재)

(주 1)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실적 추이

* 연도별 수익률 (세전 기준)

기준일 : 2017년 7월 31일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	--------	--------	--------	--------	-------

	16.08.01 ~17.07.31	15.08.01 ~16.07.31	14.08.01 ~15.07.31	13.08.01 ~14.07.31	12.08.01 ~13.07.31
펀드	0.30	2.27	3.03	3.36	2.32
비교지수	-0.96	5.50	4.85	4.83	2.31

(주 1) 비교지수 = 매경 BP 종합*90%+MMI Call*10%

(주 2) 종류 C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6.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종목의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권, 채무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권, 채무증권, 장외파생상품(스왑)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위험 등급 분류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는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총 6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등급 분류 기준표]

등급	매우 높은 위험 (1등급)	높은 위험 (2등급)	다소 높은 위험 (3등급)	보통 위험 (4등급)	낮은 위험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6등급)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2017년 07월 18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을 측정한 연평균 표준편차가 0.63%로 산출되어 6단계의 위험등급 중 5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채권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금리나 신용등급 변동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을 낮은 수준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위험관리

수준별 위험관리	해당 위험	관리방안
기업탐방 및 자료조사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부도 위험	기업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황 변동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이익감소, 자산가치 하락 위험	투자대상 기업의 가치를 정성적·정략적 분석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운용역 수시점검	경영진의 주주이익 침해 위험	주주들에 대한 불리한 정책결정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주주에 대한 이익을 제고시키도록 합니다.
최고운용책임자	장기수익률 저조 위험	투자하고 있는 자산구성이 이 투자 신탁이 추구하는 장기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을 결정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준법감시인	법규, 규정 위반 위험	정기/수시 교육, '사전주의리스트' 작성 및 적용
컴플라이언스	업무처리절차, 시스템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기/수시 모니터링 실시, 업무프로세스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단,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1)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제혜택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	연금 수령 시 -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 연금소득세 5.5%~3.3% 분리과세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과세에 관하여 관하여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1) 수익증권의 전환

- 이 투자신탁은 법 제 232 조에 의거한 전환형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투자기간중에 신탁계약서 제 27 조의 4 제 1 항 각호의 투자신탁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판매회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전환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전환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전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전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수익자가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서 제 25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처리합니다.

■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전환형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전환시 기준가격 적용방법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 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 시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전환형증권투자신탁 1호(채권) 전환시 기준가격 적용방법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 시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 시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기타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연금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연금상품으로 계약이전 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대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중 1. 재무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oreavalue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oreavalue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oreavalueasset.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한국밸류 10년투자연금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호(채권) (A3066)		
종류(클래스)	C	C-E	S-P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AP738	BG326	AP73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증도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 :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전환형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 조좌

주)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oreavalue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호(채권) (A3066)

종류	펀드코드	특징
C	AP738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C-E	BG326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S-P	AP739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11.06	최초 신고
2013.04	연금저축계좌 관련사항 적용
2014.01	소득세법 개정 반영
2014.03	종류형 펀드로 변경
2016.07	위험등급 분류체계 변경 반영
2016.08	종류 C-E 신설
2017.1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8.05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8.06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있지 않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대표전화: 02-3276-60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운용현황(2018.06.01)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이채원	1964	22	31,880 억	-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 경영학 - 동원투신운용(1996 ~ 2000) - 한국투자증권(2000 ~ 2006)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06 ~ 현재)

손환락	1981	12	17,591 억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 알파에셋자산운용 (2009 ~ 2011)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11 ~ 현재)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운용현황(2018.06.01)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김운실	1982	-	-	-카이스트 응용수학 석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11 ~ 2016) -한국투자금융지주(2017 ~ 2018.05)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18.06 ~ 현재)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자산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내역: 이 투자신탁의 설정일 이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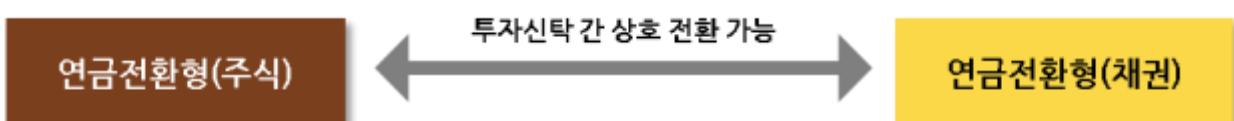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투자신탁(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전환형, 종류형

나. 전환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법 제 232 조에 의거한 전환형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투자기간중에 신탁계약서 제 27 조의 4 제 1 항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환 대상 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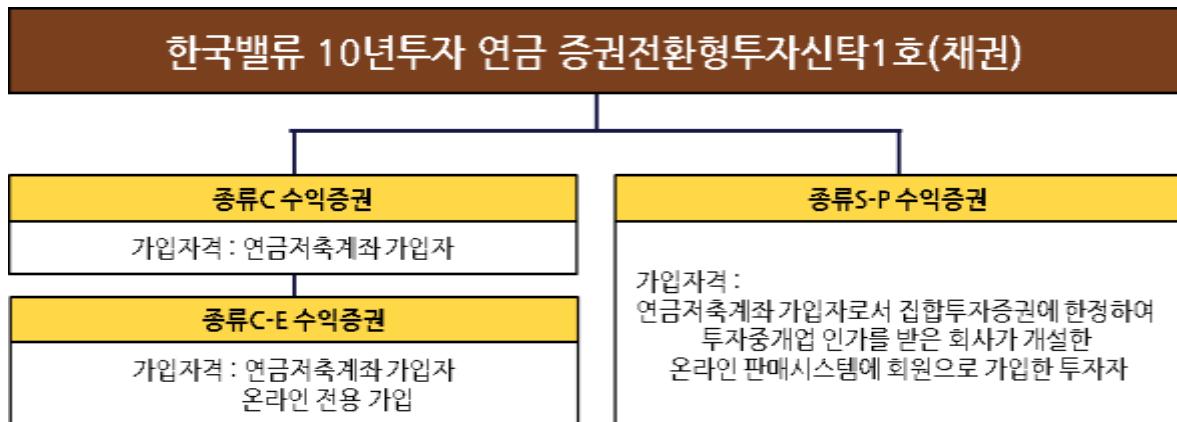


전환가능 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호(주식)	주요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
	투자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가치투자 운용철학에 따라 주로 국내 주권(주식)에 장기투자 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저평가 되어 있는 주식 및 성장잠재력이 있는 주식 등 지분증권에 집중 투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자금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비교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SPI 200] \times 0.9) + ([CD금리] \times 0.1)$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운용전략: 기업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주식을 선별하고, 기업의 수익가치(수익성)에 비해 주가가 낮은 종목에 투자(Low-PER 전략), 기업의 자산가치(안정성)에 비해 주가가 낮은 종목에 투자(Low-PBR 전략), 기업 이익을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환원해주는 주식을 선별하는 고배당 투자전략 그리고 계량적인 지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의 가치를 산출하는 신가치투자전략 등을 통해 주식을 엄선합니다. - 위험관리: 기업탐방 및 자료조사(기업가치 변동 위험 수시점검),

		운용역 수시점검(주주로서의 이익 변동 위험관리), 최고운용책임자(장기수익률 변동성 관리), 준법감시인 (법규, 규정 위반에 대한 위험 관리), 컴플라이언스(업무처리 오류, 시스템 오류 발생 위험 관리) 등 각각의 주제별로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호(채권)	주요투자대상	- 채권 60% 이상, 어음 40% 이하
	투자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국공채 위주로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일부는 유동성 자산에 탄력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자금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 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비교지수	- 매경BP종합*90%+MMI Call*10%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운용전략: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주로 채권에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파생상품, 수익증권, 기업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 · 운용합니다. - 위험관리: 만기구조 비중 조절을 통한 금리변동 위험 최소화, 내부 신용위험 관리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신용위험 관리, 투자자금의 만기를 감안한 자산 편입/운용으로 펀드 내 적정 유동성 확보를 병행합니다.

* 판매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종류형 구조



6-1.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국공채 위주로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일부는 유동성 자산에 탄력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자금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 비율	주요내용
채권	60% 이상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여음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여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금리스왑거래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 투자목적: 해지 및 해지외목적
집합투자증권등		-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단, 지분증권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증권의 대여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까지 투자 - 투자목적: 해지 및 해지외목적
환매조건부 매도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증권의 차입		- 투자신탁자산 자산총액의 20% 이하
은행계정대		-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주 1)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 2) 상기한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여음의 투자비율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예외기간을 둡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이해관계인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 83 조 제 3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동일종목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 매매 ·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 ·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 · 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 투자	<p>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증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발행 증권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주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4호 내지 제9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2) 집합투자규약 제19조 제2호 본문,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3)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채무증권/유동성자산 등의 운용전략

-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주로 채권에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파생상품, 수익증권, 기업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 · 운용합니다.

(2)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매경BP종합*90%+MMI Call*1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1) 금리변동위험 관리방안

- 만기구조 비중 조절을 통한 금리변동 위험 최소화

(2) 신용위험 관리방안

- 내부 신용위험 관리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신용위험 관리 통한 신용위험 관리

(3) 유동성위험 관리방안

- 투자자금의 만기를 감안한 자산 편입/운용으로 편드내 적정 유동성 확보에 노력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안정적인 채권, 우량 CP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당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단,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권, 채무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채권 등의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이 투자신탁은 특정 국가, 특정 자산, 특정 포트폴리오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나타나는 특수위험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유동성위험	유가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중도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채권관련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위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는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총 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등급 분류 기준표]

등급	매우 높은 위험 (1등급)	높은 위험 (2등급)	다소 높은 위험 (3등급)	보통 위험 (4등급)	낮은 위험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6등급)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2017년 07월 18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을 측정한 연환산 표준편차가 0.63%로 산출되어 6단계의 위험등급 중 5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채권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금리나 신용등급 변동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은 낮은 수준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참고 1: 표준편차 계산수식

$$\sigma = \sqrt{\frac{52}{156-1} \sum_{t=0}^{155} (r_t - \bar{r})^2}, \quad \bar{r} = \frac{1}{156} \sum_{t=0}^{155} r_t$$

* r_t : 측정 기준시점에서 t주전 월요일의 주간 수익률

- 결산일이 속한 날의 t주전 월요일 기준가를 (t+1)주전 월요일 기준가로 나눈 값에 1을 차감하여 계산해 되 결산, 배당 등을 감안하여 조정

◆ 참고 2: 수익률 표준편차 비교 예시 (4주간 수익률)

구분	CASE 1	CASE 2
1주차 수익률	2.00%	4.00%
2주차 수익률	-1.00%	-3.00%
3주차 수익률	3.00%	6.00%
4주차 수익률	-4.00%	-7.00%
4주차까지 평균수익률	0.00%	0.00%
4주차까지 수익률 표준편차	3.16%	6.06%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투자기간 동안 펀드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변동이 컸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위의 예시는 4주간의 주간수익률이 CASE1과 CASE2처럼 나타날 경우 표준편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4주간의 평균 수익률은 0%로 동일하지만 표준편차는 CASE2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투자기간 동안 수익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라 얼마만큼 변동성이 큰지 작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변동성이 작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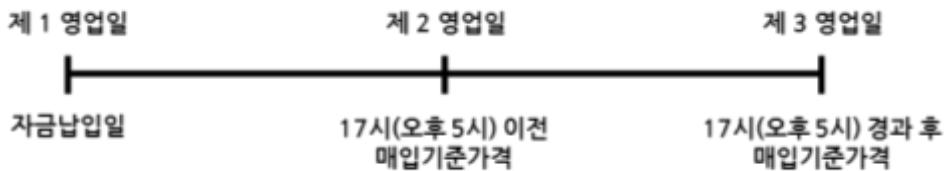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 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함)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 235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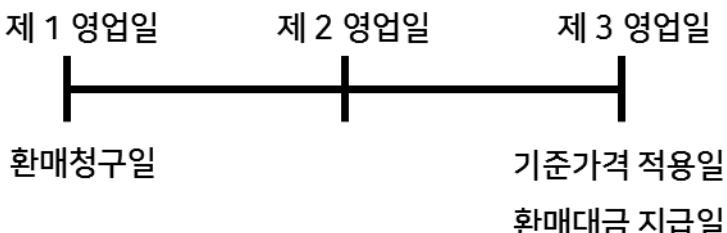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실질투자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현물보유투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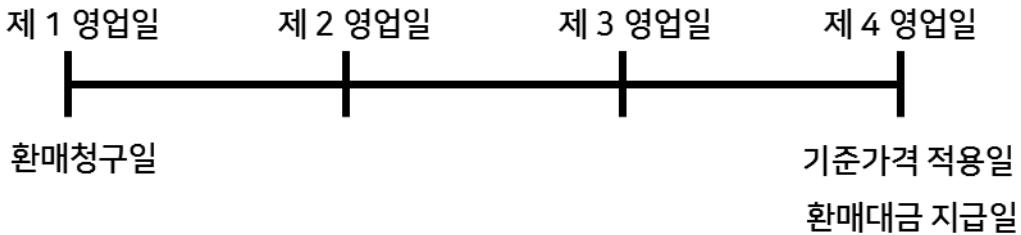
(가)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에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투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일부환매 청구시 집합투자업자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 2013년 2월 28일 이전 가입자는 일부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 26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 시 경과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집합투자규약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아래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i)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ii) 기타 법 시행령 제 257 조 제 2 항에서 정한 사항
- (나)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i)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ii)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iii)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iv) 기타 법 시행령 제 257 조 제 3 항에서 정한 사항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 258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집합투자규약 제 2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함)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1) 수익증권의 전환

- 수익자는 투자기간중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면,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판매회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전환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전환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전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전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2013년 2월 28일 이전 가입자는 일부 전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전환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수익자가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서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처리합니다.

■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전환형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전환시 기준가격 적용방법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전환전 투자신탁	전환후 투자신탁	15시 30분 이전		15시 30분 경과 후		비고
		전환전 투자신탁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전환후 투자신탁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전 투자신탁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전환후 투자신탁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연금전환형 (주식)	연금전환형 (채권)	제2영업일	제4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한국거래소 개장일

※ 투자신탁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시 30분 이전까지로 하되, 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전환형증권투자신탁 1호(채권) 전환시 기준가격 적용방법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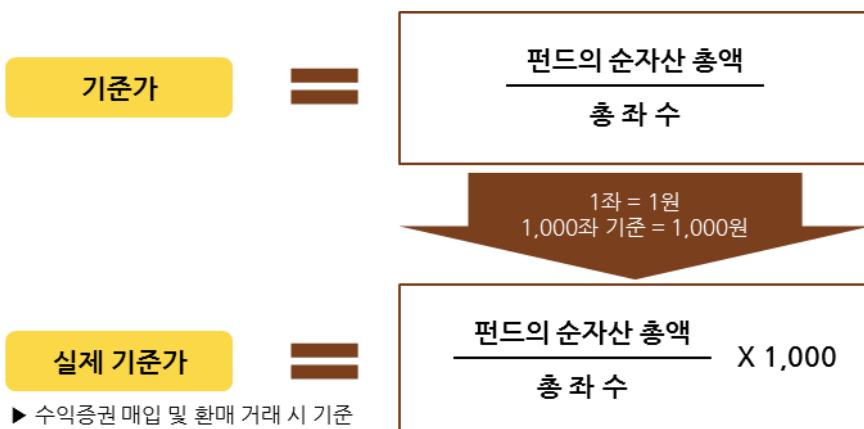
전환전 투자신탁	전환후 투자신탁	17시 이전		17시 경과 후		비고
연금전환형 (채권)	연금전환형 (주식)	전환전 투자신탁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전환후 투자신탁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전 투자신탁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전환후 투자신탁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영업일		제3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4영업일	판매회사 영업일

※ 투자신탁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주요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며,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을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합니다. 단,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 집합투자업자 본점 및 판매회사 본·지점에 공고·게시, - 집합투자업자(www.koreavalueasset.com)·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구 분	평가원칙
시 가	<p>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p>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비등록 지분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가. 다만, 취득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평가할 수 있음.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규약에 평가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채무증권등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밖에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등의 평가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하여 평가
파생결합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 또는 가격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증권의 최종시가로 평가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으로 평가
장외파생상품	-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집합투자증권	-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으로 평가.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기타자산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CEO, CIO, CMO, 준법감시인, 운용 및 마케팅담당부서장, 리스크관리주관부서장
업 무	<p>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p>2.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의 평가에 관한 사항</p> <p>3.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p> <p>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p> <p>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등 평가에 관한 사항</p> <p>7.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p> <p>8. 평가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p> <p>9. 기타 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p>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법 제76조 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부과비율(%)	부과시기
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판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기타비용	증권거래 비용
C	0.1500	0.3500	0.0200	0.0180	0.5380	0.0109	0.5489	0.0060
C-E	0.1500	0.1700	0.0200	0.0180	0.3580	-	0.3580	-
S-P	0.1500	0.1500	0.0200	0.0180	0.3380	0.0102	0.3482	0.0058
지급시기	최초보수계산일로부터 매 3 개월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연도: 2016.07.19~2017.07.18]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연도: 2016.07.19~2017.07.18]

주 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종류	1년	3년	5년	10년
C	55	172	300	673
C-E	36	112	196	443
S-P	35	109	191	431

주) 투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7년 07월 18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투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참고: 기준가와 과표기준가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둘째는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수익 그리고 셋째는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입니다.

구분	기준가	과표기준가
기준가 산정 시 반영하는 수익	매매차익, 배당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이자수익

예를 들어 최초 1,000 원부터 출발한 펀드의 기준가가 1,200 원이 되었을 때 그 차액(200 원)이 매매차익 100 원 배당수익 50 원 이자수익 50 원으로 구성되었다면 통상적으로 말하는 기준가는 1,200 원이지만 과표기준가는 매매차익 100 원을 제외한 1,100 원이 됩니다.

단, 과표기준가를 적용하여 과세를 할 경우 투자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1000 원으로 출발한 펀드의 기준가격이 매매손실은 200 원이고 배당수익이 50 원, 이자수익이 50 원일 경우 기준가격은 900 원($1,000-200+50+50$)이 되어 100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매매손실은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과표기준가는 배당수익(50 원)과 이자수익(50 원)의 합계 만큼이 추가된 1,100 원($1,000+50+50$)이 되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제혜택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5.5% ~ 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 분리과세 한도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 연금소득세 5.5%~3.3% 분리과세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13.02.28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동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법시행령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보아 과세하되, 다음의 사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합니다.

[종전 가입자에 대한 특례 사항]

구분	주요 내용
해지가산세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해지가산세 면제사유 (특별중도해지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치료,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 외 수령 시 과세 (특별중도해지 시 포함)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사망으로 인한 해지시 과세	연금소득세 5.5%(종합과세 가능)

* '13.01.01 이후 가입한 계좌의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사유 및 과세는 소득세법을 적용

(단,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연금소득세 5.5% 과세)

* '12.12.31 이전 가입한 고객은 사망 외 부득이한 사유 없음

- ※ 기타소득세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입니다.
-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과세는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과세에 과세에 관하여 관하여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6기(2016.07.19 - 2017.07.18)	한영회계법인	적정
제 5기(2015.07.19 - 2016.07.18)	한영회계법인	적정
제 4기(2014.07.19 - 2015.07.18)	한영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항 목	요약 대차대조표		
	제 6기 (2017.07.18)	제 5기 (2016.07.18)	제 4기 (2015.07.18)
운용자산	61,016,135,926	62,172,276,686	50,338,575,149
증권	60,729,345,980	61,954,522,109	49,555,946,688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86,789,946	217,754,577	782,628,461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6,633,580,994	3,521,434,066	1,503,415,576
자산총계	67,649,716,920	65,693,710,752	51,841,990,725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804,492,895	20,345,361	516,965,801
부채총계	1,804,492,895	20,345,361	516,965,801
원본	65,317,430,608	64,191,519,983	49,806,335,099
수익조정금	-10,918,128	126,145,761	278,654,949
이익잉여금	538,711,545	1,355,699,647	1,240,034,876
자본총계	65,845,224,025	65,673,365,391	51,325,024,924

(단위: %, 원)

항 목	요약 손익계산서		
	제 6기 (2016.07.19 - 2017.07.18)	제 5기 (2015.07.19 - 2016.07.18)	제 4기 (2014.07.19 - 2015.07.18)
운용수익	548,277,995	1,680,355,250	1,474,409,011
이자수익	1,576,120,544	1,469,327,733	1,189,085,165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수익(손)	-1,027,842,549	211,027,517	285,323,846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3,840,000	307,405,009	221,095,014
관련회사 보수	0	305,425,009	221,095,014
매매수수료	3,840,000	1,980,000	0

기타비용	5,726,450	17,250,594	13,279,121
당기순이익	538,711,545	1,355,699,647	1,240,034,876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 대차대조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주1)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전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손익계산서

주1)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전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종류 C]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6.07.19 - 2017.07.18	639	639	190	190	174	174	654	656
2015.07.19 - 2016.07.18	496	496	308	311	166	168	639	653
2014.07.19 - 2015.07.18	333	333	397	404	234	238	496	511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 제 6 기(2016.07.19 - 2017.07.18): 173,641,056 원
- 제 5 기(2015.07.19 - 2016.07.18): 1,473,689,669 원
- 제 4 기(2014.07.19 - 2015.07.18): 1,512,970,782 원

[종류 S-P]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6.07.19 - 2017.07.18	3	3	1	1	2	2	2	2
2015.07.19 - 2016.07.18	2	2	3	3	1	1	3	3
2014.07.19 - 2015.07.18	0	0	3	3	1	1	2	2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 제 6 기(2016.07.19 - 2017.07.18): 1,036,678 원

- 제 5 기(2015.07.19 - 2016.07.18): 8,155,739 원
- 제 4 기(2014.07.19 - 2015.07.18): 5,719,043 원

[종류 C-E]

(단위: 억좌, 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6.07.19 - 2017.07.18	0	0	0	0	0	0	0	0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 제 6 기(2016.07.19 - 2017.07.18): 0 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기준일: 2017.07.3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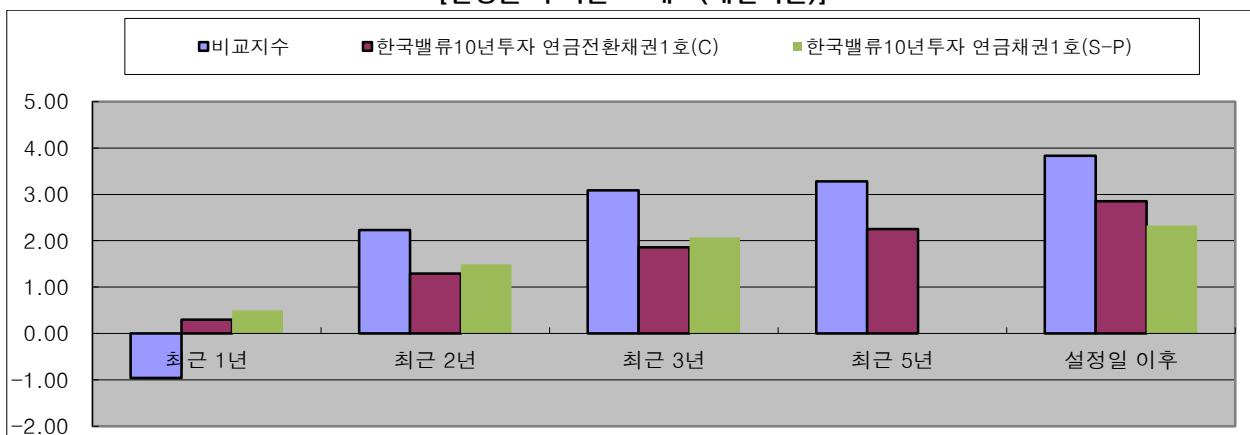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6.08.01~17.07.31	15.08.01~17.07.31	14.08.01~17.07.31	14.08.01~17.07.31	11.07.19~17.07.31
종류 C	0.30	1.29	1.86	2.25	2.85
종류 S-P	0.50	1.49	2.07	-	2.33
비교지수	-0.96	2.23	3.09	3.28	3.83

주1) 비교지수: 매경BP종합*90%+MMI Call*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세전기준)]



※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6.08.01~17.07.31	15.08.01~16.07.31	14.08.01~15.07.31	13.08.01~14.07.31	12.08.01~13.07.31
종류C	0.30	2.27	3.03	3.36	2.32
종류S-P	0.50	2.48	3.24	-	-
비교지수	-0.96	5.50	4.85	4.83	2.31

주1) 비교지수: 매경BP종합*90%+MMI Call*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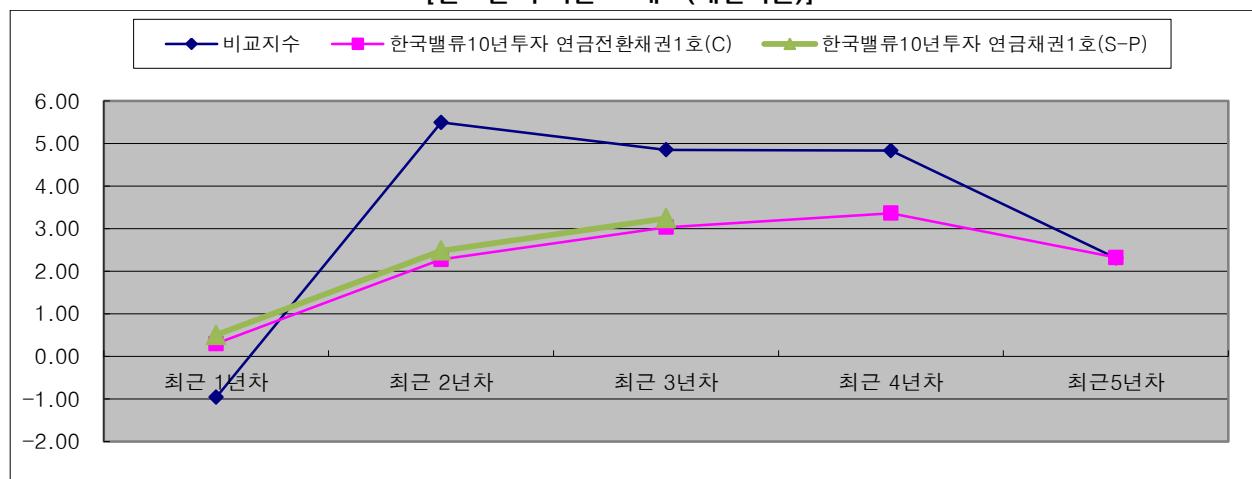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연도별 수익률 그래프(세전기준)]



※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 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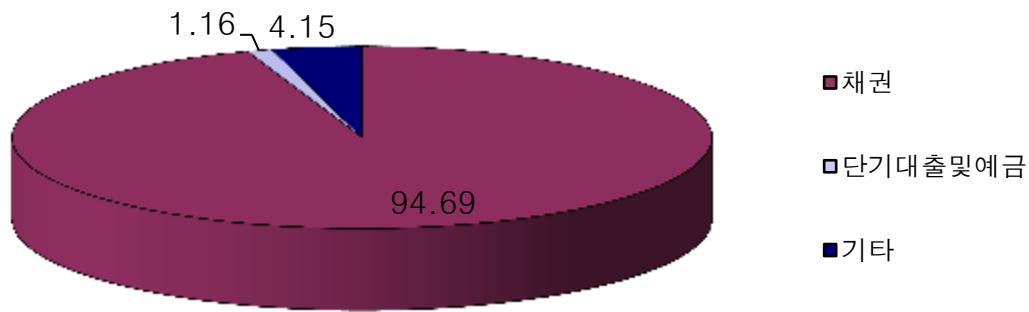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기준일: 2017.07.18 /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641	0	0	0	0	0	0	0	8	28	676
	(0)	(94.69)	(0)	(0)	(0)	(0)	(0)	(0)	(0)	(1.16)	(4.15)	(100)
합계	0	641	0	0	0	0	0	0	0	8	28	676
	(0)	(94.69)	(0)	(0)	(0)	(0)	(0)	(0)	(0)	(1.16)	(4.15)	(100)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자산구성현황]



(1) 국내 채권 종류별 구성현황

(2017.07.18 현재 / 단위: 억원, %)

구분	채권종류						합계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통화채	회사채	
금액/비중	100	105	104	82	15	235	641
	(15.58)	(16.43)	(16.16)	(12.78)	(2.34)	(36.7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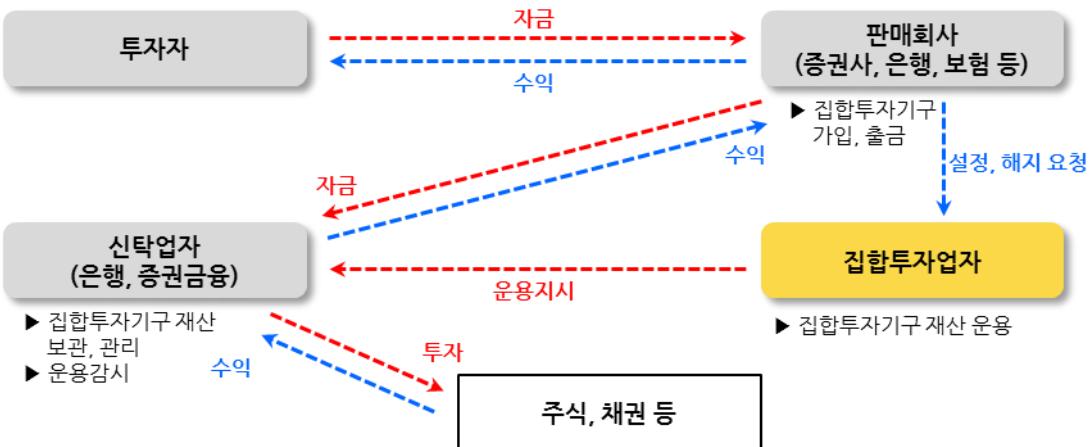
(2) 국내 채권 신용평가등급별 구성현황

(2017.07.18 현재 / 단위: 억원, %)

구분	신용평가등급				합계
	RF	AAA	AA-이상	무등급	
금액/비중	220	297	106	18	641
	(34.35)	(46.31)	(16.51)	(2.83)	(100.0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대표전화: 02-3276-6000, www.koreavalueasset.com)
회사연혁	<p>2006. 02: 밸류운용(주) 설립</p> <p>2006. 04: 자산운용업 허가, 한국밸류자산운용(주) 사명변경</p> <p>2006. 12: 한국밸류 10년투자펀드, 금융감독원 선정 2006년 우수금융신상품 최우수등급상 수상</p> <p>2006. 12: 이채원 전무, 금융감독원 선정 '올해의 업무유공자' 수상</p> <p>2008. 08: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p> <p>2009. 04: 국내 최초 고객초청 운용보고대회 개최</p> <p>2009. 07: 투자일임업 실시</p> <p>2010. 02: '생활속의 펀드이야기' 펀드 역사 전시회 개최</p> <p>2010. 02: 투자자문업 실시</p> <p>2012. 07: 최대주주 변경(한국투자운용지주→한국투자증권)</p>
자본금	100 억
주요주주현황	한국투자증권(100%)

나. 주요 업무

-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6.12.31	2015.12.31	계정과목	'16.01.01 ~'16.12.31	'15.01.01 ~'15.12.31
현금및예치금	31,097	35,249	영업수익	27,777	33,619
매도가능금융자산	1,519	1,519	영업비용	10,129	10,972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0	44	영업이익	17,648	22,647
유형자산	261	324	영업외수익	4	47
무형자산	761	684	영업외비용	2	38
이연법인세자산	291	525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17,650	22,656
기타자산	6,538	1,765	계속사업손익 법인세비용	4,182	5,078
자산총계	40,466	40,109	계속사업이익	13,468	17,578
퇴직급여부채	0	480	당기순이익	13,468	17,578
기타부채	3,249	5,880			
부채총계	3,249	6,360			
자본금	10,000	10,000			
자본잉여금	0	0			
이익잉여금	27,217	23,749			
자본총계	37,217	33,749			
부채와자본총계	40,466	40,109			

라. 운용자산 규모

(2017.07.31 현재/ 단위: 억원)

구분	증 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수탁고	23,209	15,937	675	0	0	0	0	39,82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회사명	한국투자신탁운용
업무위탁 범위	운용지원, 펀드 설정·해지, 펀드결산 및 회계감사, 전산업무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회사명	한국증권금융(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10
회사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일 : 1955.10.(한국연합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으로 개칭, 1962.7.] - 1971년 12월 증권유통금융업무 개시 - 1986년 7월 공모주청약예수금업무 개시 - 1997년 4월 증권투자자보호기금관리업무 개시 - 1999년 7월 고객예탁금 전액관리업무 개시 - 2005년 9월 증권수탁업무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획득
홈페이지	http://www.ksfc.co.kr

가. 주요업무: 신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5) 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금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나. 의무 및 책임

(1) 의무

- (가) 신탁업자는 투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신한아이티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02-2168-0400)
회사연혁	- 2000.06.15 회사 설립 - 2008.08.05 신한아이티스(주) 상호 변경
홈페이지	http://www.shinhanaitas.co.kr

가. 주요업무: 기준가격 산정 및 통보

나. 의무 및 책임

-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2) 법령 ·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집합투자업자,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한국자산평가(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02-399-3350)	www.koreabp.com
KIS 채권평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42 (02-3215-1444)	www.bond.co.kr

나이스피앤아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www.nicepni.co.kr
(주)에프앤자산평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9 (02-721-5300)	www.fnpricing.com

가. 주요 업무

- (가)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준칙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합니다.
 -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
 -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 (3)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 (나)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증권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집합투자기구에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가)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나)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가) 수익자총회의 소집

- (i)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ii)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iii)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의결권 행사방법

- (i)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ii)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iii)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iv)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연기수익자총회

- (i)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ii)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함)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iii)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가)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나)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 (1)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2)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 집합투자규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소 및 관리 정책, 발생의 사전 억제 정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해소 및 관리 정책

- 금융위원회의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계획을 ‘임의 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립한 정리계획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정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규 공모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 이행실적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합니다.

2. 발생 사전 억제 정책

- 신규 집합투자기구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반영하고, 신규 판매 시 판매사에 해당사실을 알려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 신설 및 클래스 추가를 위한 경우이거나, 설정 시부터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6개월간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 주금,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 등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당사의 대표 집합투자기구(투자대상자산이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당사가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
 - (2) 집합투자기구 설정 1년 후에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 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정리된다는 사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 (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i)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ii)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iii)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iv)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 (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 서류”라 함)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i) 대차대조표
 - (ii) 손익계산서
 - (iii)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
- (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i)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ii)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iii)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다)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i) 결산서류

(ii) 회계감사보고서

(iii) 수익자총회 의사록

(라)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상기의 비치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마)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다)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 · 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역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7. 매월의 주식, 주식 외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별 거래의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 및 그 비중

8.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9.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10.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라)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나)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다)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나)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다)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마)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바)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사)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아)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수시공시사항이 발행한 경우 아래의 공시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수시공시사항]

(가)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나)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라)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마) 투자설명서의 변경.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바)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아)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자) 설정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차)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공시방법]

(가) 집합투자업자(www.koreavalueasset.com),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다)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가)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등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다)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기준일: 2017.07.31 현재, 단위: 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한국투자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채권	1,103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1) 투자중개업자 선정의 기본원칙

- 당사 집합투자재산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선정 방법

-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Trader, Manager 등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담당자들이 주식부문은 2 개월에 1 회, 채권부문은 3 개월에 1 회 실시합니다.

(3) 평가 항목

- 매매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 정확성, 시장정보 제공 및 수준, 신용도, Back-office 의 서비스 수준, 수수료 수준 등 매매업무 기여도와 관련된 사항과 시장, 업종 또는 종목 분석자료의 효용성, 분석 Tool 의 제공, 시장정보의 제공 및 수준, 종목추천, 기업탐방 주선 및 투자설명회 개최 등 펀드운용 및 기업분석 업무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